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216 제출연월일: 2024. 7. 1. 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·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의 옥 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.
 -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 또는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.
 - 1. 옥외광고 업무 관계 공무원
 - 2.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3. 그 밖에 건축, 도시, 디자인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1조제2항 중 "제7조제3항, 제9조제1항 전단·후단"을 "제9조제1항 전단·후단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	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		
치) ① (생 략)	치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	②		
으로 마련한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7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		
	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
제7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) ①・	제7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) ①・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		
	<u>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</u>		
	구의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		
	는 공무원 중 조례로 정하는		
	사람이 된다.		
<u><신 설></u>	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		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
	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(특별		
	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		
	포함한다) 또는 시장등(특별자		
	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		
	제외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		
	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공		
	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		

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</u> 1 미만이어야 한다.

- 1. 옥외광고 업무 관계 공무원
- 2.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
- 3. 그 밖에 건축, 도시, 디자인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